

KCS 64 10 25 : 2023

안전 및 보건관리

2023년 01월 개정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 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KCS 64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 월)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제정 (1967.12)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 건설공사의 대형화와 다양화, 새로운 공법 및 자재의 발전 등 건설기술 발전에 현추세(現 趨勢) 반영, 개정	개정 (1977.12)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 해외자료의 분석과 관련 각종 시방서, 시설기준 및 제규정 등과 상호 연관성을 검토하여 반영, 개정	개정 (1986.12)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 건설환경의 변화와 부실방지를 위한 품질향상 기준을 구체화 하고, 환경보호와 지반조사 등 세부적인 기준 보완, 개정	개정 (1996.12)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로 개칭하고, 한국산업규격(KS)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등 타 기준의 개정내용 반영 등 대폭 개정	개정 (2005.11)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 태풍, 이상파랑 및 지진해일 등 이상기후 대응과 저탄소, 온실 가스저감 등 녹색항만 및 친환경 설계 반영, 매스 콘크리트, 상치콘크리트, 필터매트, 함선, 마리나시설 관련 시방 보완, 개정	개정 (2012.12)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시방코드(KCS 64 00 00)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표준시방서를 시방코드(KCS 64 00 00)로 개편하고, 타 분야 시방코드와 중복·상충 항목을 비교, 검토하여 보완	개정 (2017.08)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시방코드(KCS 64 00 00)	• 기존 표준시방서와 전문시방서를 이원화하여 관리하던 항만 건설공사 시공기준을 표준시방서로 통합 코드화하고, 특수 분야 공사는 전문시방서로 별도 관리함으로써 각각의 역할과 기능 분담을 명확하게 재정립하여 코드체계로 개편	개정 (2018.04)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시방코드(KCS 64 10 25)	• 중대재해처벌법 등 최근 강화된 건설안전 관련 규정 반영 및 국가건설기준 공통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사항 등을 현행화 하여 건설안전과 품질향상을 도모 및 코드번호/명칭 등 개정	개정 (2022.12)

제 정 : 2017년 8월 16일 개 정 : 2023년 01월 30일
 심 의 :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소 관 부 서 :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한국항만협회

-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일반원칙	2
1.5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2
1.6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2
1.7 안전관리조직	2
1.8 안전관리활동	3
1.9 현장안전관리	4
1.10 현장보건관리	6
 2. 자재	9
 3. 시공	9

KCS 64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1) 이 기준은 항만 및 주변해안 시설 공사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 (2)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
- (3) 이 기준의 적용순서는 KCS 64 10 05 공사일반(1.1.2 적용순서)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 발파작업 표준 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
-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

소방기본법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2.2 관련기준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 관리

항만건설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해양수산부)

1.2.3 관련표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일반원칙

1.4.1 수급인의 일반적 책임

- (1) 수급인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이행해야 하며, 그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2) 수급인은 공사현장 내의 수급인의 근로자(하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통제, 안전·보건 및 보안, 인사사고에 대하여 비록 관련 법규에 규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 (3) 수급인은 본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양식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와 관련 손해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보상해야 한다.
- (4) 수급인이 본 공사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 하도급 해서는 안 된다.

1.5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1) 이 기준은 KCS 10 10 25 (1.5 안전관리계획) 및 항만건설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에 따른다.
- (2)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 ①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을 따른다.

1.6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 (1) 이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2) 수급인은 공사 수해방지계획안을 편성하여 현장사무실 내에 비치·부착한다.

1.7 안전관리조직

- (1) 이 기준은 KCS 10 10 25 (1.6 안전관리체계)에 따른다.
- (2)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조직을 구성, 운영해야 한다.

1.8 안전관리활동

1.8.1 안전·보건교육

- (1) 이 기준은 KCS 10 10 25 (1.8 안전교육)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3조)에 따라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8.2 안전점검

- (1) 이 기준은 KCS 10 10 25 (1.7 안전점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적용한다.
- (2) 건설공사의 시공자는 자체안전점검 및 건설안전 전문기관의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실시해야 한다.
- (3)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해야 하고 기록서류는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해야 한다.
- (4) 안전점검은 다음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 ① 공사 목적물의 안전성
 - ② 공사 시공도면 및 공법 선택의 적합성
 - ③ 공사품질의 적정성
 - ④ 인접된 건축물·구조물의 안전성
- (5) 발주자는 발주한 건설공사의 안전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시공자의 안전에 대한 제반의 관리 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해당 공사의 일시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1.8.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 (1) 발주자는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해야 한다.
- (2)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상된 금액 이상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해야 하며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 (3) 수급인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시행할 때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하수급인에게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해당 공사 현장 내에 비치해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 도중 또는 종료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5)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

- ①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수급인은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 계약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은 때에는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9 현장안전관리

1.9.1 공통사항

- (1)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 ①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통제와 질서 및 보안의 유지
 - ② 화재, 도난, 소음 등의 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 ③ 재료와 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
 - ④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
 - ⑤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는 관계 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근로자의 안전보호구, 재해 예방시설, 경보용 설비 및 유사시의 대책 등의 구비
- (2) 공사구역 및 부근해역에 대한 규제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관할 경찰서, 해양경찰서, 지방해양수산청 등)과 협의하고 협의된 규제 내용 관련 정보는 관계기관 및 유관 단체와 공유해야 한다. 작업구역은 간판, 울타리, 부표(부표, 등부표 등) 등을 사용하여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 (3) 공사현장 및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또 해저에 매설된 시설물(관로, 케이블 등)에 대해서도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1.9.2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 (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조치를 해야 한다.
- (2)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계획, 조치,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해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 (3) 공사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 ②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 ③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 표지
 - ④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 ⑤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 ⑥ 위생적인 화장실과 배수시설
 - ⑦ 의무실 및 구급약의 확보
 - ⑧ 유류, 가스(Gas) 등 유해·위험물 보관 장소의 설치 및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또는 부착
 - ⑨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4) 주변 구조물 보호
- ① 공사 중에는 현장 내부뿐만 아니라 현장 주위의 시설물이나 환경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며, 사전 조사에 의한 매설물 파악, 방호조치, 정기적 검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 공사현장 근로자에게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하고 매설된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리 될 수 있도록 한다.
- (5)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 ① 지장물 철거는 기초상태, 크기, 높이, 하중 등을 충분히 조사, 검토한 후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 소관기관 또는 소유주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본 공사가 끝난 뒤에는 공사용 임시 시설물, 잔재, 폐기물, 기타 모든 불용품을 철거하고 청소를 완료하였을 때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해체공사는 별도의 특기사항이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에 따른다.
- (6) 폭발물의 취급
- ① 폭발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화약류 취급에 관한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해야 한다.
 - ② 발파작업에 사용되는 폭발물은 발파작업 표준 안전작업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해상 발파작업을 할 경우에는 항만건설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의 작업방법에 준한다.
- (7) 작업장 주변
- ① 제3자의 위험이 예상되는 현장 주변은 지상 높이 1.8m 정도의 울타리를 설치한다.
 - ② 통행인 및 통행 차량에 대한 낙하물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 ③ 차량 출입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④ 공사표지, 경광등, 공사 예고판 등을 부착해야 한다.
 - ⑤ 작업장 주변은 정리정돈 해야 한다.
 - ⑥ 작업장 주변은 안전시설의 완비 및 유지를 위하여 순찰을 실시해야 한다.
- (8) 매설물 부근에서의 작업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도면 확인 및 시굴 등으로 사전조사를 실시
 - ② 가스관, 전력선 부근의 기계 굴착작업 금지
 - ③ 가스관 부근의 굴착작업 중 가스농도 측정
 - ④ 매설물 이설 및 보강작업 시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그의 지휘하에 작업 실시
- (9) 위험물(지뢰, 폭탄 등)이 잔존할 가능성이 있는 해역에서의 준설, 항타 및 이와 유사한 공사 등으로 지반을 교란 또는 지반에 충격을 주는 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위험물을 탐사하고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안전 및 보건관리

- (10) 해상(또는 수상)에서 중량물을 설치하거나 운반하는 작업에 쓰이는 기중설비 또는 기중기(크레인)를 대선에 탑재한 선박(조합기중기선)은 파랑 및 너울 등의 해양 환경으로 인한 장비 전도 또는 작업선의 전복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중설비 또는 기중기를 작업선에 단단하게 고정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 (11)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공사현장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항만건설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1.9.3 정보관리

- (1) 해상공사를 안전하게 추진하기 위한 정보로는 기상·해상 등의 자연조건에 관련된 정보, 선박교통 및 어업 등 사회조건에 관련된 정보, 작업선박의 난폭한 운항 등과 관련된 정보 그리고 토취장(土取場) 등 점용구역 내에서의 작업에 관련된 정보들을 관리하고 이용해야 한다.

1.9.4 항행관리(航行管理)

- (1) 해상공사에서는 반드시 항행관리를 해야 한다. 이러한 항행관리는 일반적으로 공사용 작업선박의 관리와 공사 해역 부근을 항행하는 일반 항행선박의 관리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 (2) 수급인은 항만건설작업선 등 해상공사 현장 주변의 항행선박 등의 안전한 항행을 위하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출입신고 및 항행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항행관리 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10 현장보건관리

1.10.1 산업보건기준

- (1) 유해원인제거 : 가스, 유류, 화학물질, 증기, 유해광선,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를 해야 한다.
- (2) 채광 및 조명 :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는 방법으로 관련법에 맞게 설치해야 하고, 인근을 항행하는 선박의 야간 통행에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3) 온도 및 습도 : 고온, 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 작업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도, 습도조절 조치를 해야 한다.
- (4) 출입금지 조치 : 유해·위험한 장소에는 출입금지 조치를 하고, 이를 게시해야 한다.

- (5) 휴게시설 :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6) 응급용구 :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를 비치하고 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7) 세척시설 : 작업 중 근로자의 의복이 심하게 젖거나 유해물질 등에 오염될 수 있는 작업장에는 탈의시설, 목욕시설, 세탁시설 및 작업복을 말릴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10.2 건강진단

- (1)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보건기준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등을 실시해야 한다.

1.10.3 작업환경측정

- (1)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한 후에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 (2)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3)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작업장 내의 노출농도는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1.10.4 질병자의 취업금지 및 제한

- (1)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

1.10.5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공사계약일반조건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때 공사감독자가 임회할 수 있어야 한다.
- (2) 시가지 공사 또는 사용 중인 기존 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자들과 협의 조정해야 하며 자체에 무리가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 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안전 작업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3) 야간작업 시는 조명, 작업장의 정리정돈,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신호, 신호수 배치 및 경계표시의 설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비래토석, 낙하물 보호시설의 점검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조치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
- (4)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에 따른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잠함 또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된다.

1.10.6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치

- (1)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반재료를 구입 또는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 등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고 그 내용을 취급자에게 교육해야 한다.

1.10.7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

- (1) 작업자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등에 의해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수행할 경우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의 개선 등을 시행해야 하며 필요시 보건기준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10.8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

- (1)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10.9 사고처리 및 응급처치

- (1) 응급조치 : 사고 발생 시 근로자의 응급구조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 ①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비치해야 한다.
 - ② 사고 발생 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 가.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
 - 나.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 (2) 사고처리
 - ① 이 기준은 KCS 10 10 25 (1.9 사고처리)에 따른다.
 - ②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즉시 안전담당자와 공사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③ 사고조사는 동종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④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발생 즉시 관할 경찰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보험사, 발주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요양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안전 및 보건관리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2023년 개정)	총괄	안익성	(주)항도엔지니어링	사장
	항만및해안	김진호	(주)서영엔지니어링	부사장
	항만및해안	류혁근	(주)삼영기술	부회장
	품질및안전	강기중	코모씨스(주)	대표이사
	품질및안전	이상웅	(주)항도엔지니어링	부사장
	항만기술기준 전문기관	이재진	한국항만협회	부장
	항만기술기준 전문기관	박수현	한국항만협회	차장
	항만기술기준 전문기관	홍성현	한국항만협회	과장

심의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2023년 개정)	항만및해안	고장희	S K 에코플랜트(주)	프로
	항만및해안	이명호	(주)혜인이앤씨	부사장
	항만및해안	조충현	인천항만공사	실장
	토목시공	류성구	S K 에코플랜트(주)	프로
	토목시공	문성현	(주)건화	이사
	토목시공	허정석	여수광양항만공사	실장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분야	성명	소속	직급
(2023년 개정)	의 장	이 수 호	해 양 수 산 부	국 장
	항 만 개 발	이 중 인	전 남 대 학 교	교 수
	항 만 개 발	우 수 한	중 앙 대 학 교	교 수
	항 만 시 설 기 술 기 준	김 영 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 구 위 원
	항 만 시 설 기 술 기 준	김 인 호	강 원 대 학 교	교 수
	항 만 시 설 기 술 기 준	정 민 영	(주) 유 신	부 사 장
	항 만 시 설 기 술 기 준	조 미 라	인 덕 대 학 교	교 수
	항 만 시 설 기 술 기 준	송 정 화	부 산 항 만 공 사	부 장

해양수산부	성명	소속	직책
	이 수 호	항 만 국	국 장
	전 충 남	항 만 기 술 안 전 과	과 장
	이 귀 섭	항 만 기 술 안 전 과	시설사무관
	김 슬 기	항 만 기 술 안 전 과	시 설 주 사

표준시방서
KCS 64 10 25 : 2023

안전 및 보건관리

2017년 8월 16일 제정
2018년 4월 17일 개정
2023년 1월 30일 개정

(관련단체)

한국항만협회

07271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53(양평동 3가)

월드메르디앙 비즈센터 707호

☎ 02-2165-0091~3 E-mail : kpha@koreaports.or.kr

<https://www.koreaports.or.kr>

항만기술기준센터

07271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53, 705호

(양평동 3가, 월드메르디앙비즈센터)

☎ 02-2165-0103~6 E-mail : kpcs@koreaports.or.kr

<https://kpcs.portcals.go.kr>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항만기술안전과

☎ 044-200-5951, 5952

<https://www.mof.go.kr>